

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-71호

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 제11조, 제14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, 제9조,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11년 12월 16일

우정사업본부장

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령

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(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-65호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예금의 종류 및 내용) 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률”이라 한다) 제11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가.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

- 10) 우체국청춘연금통장 : 4대 연금수급자에 대하여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와 수수료면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

제3조(예금종류별 가입대상 및 예금액의 제한) 법률 제11조 및 제16

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가입대상 및 종류별 예입 최고한도액 또는 최저액은 다음과 같다.

예금종별	가입대상	예입 최고한도액 또는 최저액
보통예금	제한없음	제한없음
저축예금	개인	제한없음
듬뿍우대저축예금	개인	제한없음
e-Postbank예금	개인으로서 인터넷뱅킹 가입자	제한없음
웰빙우대저축예금	개인(1인 1계좌)	제한없음
주니어우대저축예금	만19세 미만 개인(1인 1계좌)	제한없음
2040 ¹⁰ 저축예금	제한없음(1인 1계좌)	제한없음
기업든든MMDA통장	법인, 단체 및 개인사업자	제한없음
우체국행복지킴이통장	기초생활보장수급자	제한없음
우체국청춘연금통장	개인(1인 1계좌)	제한없음

제4조(예치기간 및 이자율)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가.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별 이자율

10) 우체국청춘연금통장

가) 예치기간 : 제한없음

나) 이자율 : 최고 연 3.0%

(1) 기본이율 : 연 0.2%

(2) 우대이율 : 매 결산기별 약정 및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연 2.8%p

제6조(이자의 계산)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 종류별 이자의 계산방법 및 정기계산시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

같다.

가.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

4) 이자의 정기계산

바) 우체국청춘연금통장은 매월 넷째 토요일에 이자를 계산하고 각각 그 익일 원금에 가산한다.

부칙 <개정 2011. 12. 16>

이 고시는 2011년 12월 16일 부터 시행한다.

개 정 전	개 정 후
가.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별 이자율 (항목 추가)	가.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별 이자율 10) 우체국청춘연금통장 가) 예치기간 : 제한없음 나) 이자율 : 최고 연 3.0% (1) 기본이율 : 연 0.2% (2) 우대이율 : 매 결산기별 약정 및 거래실적 에 따라 최고 연 2.8%p
제6조(이자의 계산) 가.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4) 이자의 정기계산 (항목 추가)	제6조(이자의 계산) 가.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4) 이자의 정기계산 바) 우체국청춘연금통장은 매월 넷째 토요일에 이자를 계산하고 각각 그 익일 원금에 가산한다.

우체국예금 고시 개정안(신·구조문 대비표)

개 정 전	개 정 후																					
제2조(예금의 종류 및 내용) 가.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(항목 추가)	제2조(예금의 종류 및 내용) 가.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10) 우체국청춘연금통장 : 4대 연금수급자에 대하여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와 수수료면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																					
제3조(예금종류별 가입대상 및 예금액의 제한) <table><tr><th>예금종별</th><th>가입대상</th><th>예입 최고한도액 또는 최저액</th></tr><tr><td>기업돈드MMA통장</td><td>법인, 단체 및 개인사업자</td><td>제한없음</td></tr><tr><td>우체국행복지킴이통장</td><td>기초생활보장수급자</td><td>제한없음</td></tr></table>	예금종별	가입대상	예입 최고한도액 또는 최저액	기업돈드MMA통장	법인, 단체 및 개인사업자	제한없음	우체국행복지킴이통장	기초생활보장수급자	제한없음	제3조(예금종류별 가입대상 및 예금액의 제한) <table><tr><th>예금종별</th><th>가입대상</th><th>예입 최고한도액 또는 최저액</th></tr><tr><td>기업돈드MMA통장</td><td>법인, 단체 및 개인사업자</td><td>제한없음</td></tr><tr><td>우체국행복지킴이통장</td><td>기초생활보장수급자</td><td>제한없음</td></tr><tr><td>우체국청춘연금통장</td><td>개인(1인1계좌)</td><td>제한없음</td></tr></table>	예금종별	가입대상	예입 최고한도액 또는 최저액	기업돈드MMA통장	법인, 단체 및 개인사업자	제한없음	우체국행복지킴이통장	기초생활보장수급자	제한없음	우체국청춘연금통장	개인(1인1계좌)	제한없음
예금종별	가입대상	예입 최고한도액 또는 최저액																				
기업돈드MMA통장	법인, 단체 및 개인사업자	제한없음																				
우체국행복지킴이통장	기초생활보장수급자	제한없음																				
예금종별	가입대상	예입 최고한도액 또는 최저액																				
기업돈드MMA통장	법인, 단체 및 개인사업자	제한없음																				
우체국행복지킴이통장	기초생활보장수급자	제한없음																				
우체국청춘연금통장	개인(1인1계좌)	제한없음																				
제4조(예치기간및이자율)	제4조(예치기간및이자율)																					